

경상북도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및 학습권 보장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소관기관 및 부서 :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국

2.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3년 8월 17일, 박채아 의원 외 10명

나. 회부일자: 2023년 8월 22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4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3년 8월 30일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의결)

3.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설명자 : 박채아 의원

나. 제안이유

○ 최근 심각해지는 교육의 세 가지 주체인 교원·학생·학부모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각 주체 간의 신뢰 관계 회복을 달성하고, 교원의 교육활동과 학생의 학습활동을 각각 보장하여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교육활동 보호 및 학습권 보장의 기본 원칙을 규정함(안 제 3조)
- 교육감의 책무, 학교장의 책무, 교원·학생·학부모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제6조)
- 학부모 및 민원인의 학교 내 출입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교원의 교육활동 보장, 학생의 학습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제9조)

4. 검토보고의 요지(수석전문위원 장중찬)

가. 제안취지

- 본 조례안은 최근 심각해지는 교육의 세 가지 주체인 교원·학생·학부모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각 주체 간의 신뢰 관계 회복을 달성하고, 교원의 교육활동과 학생의 학습활동을 각각 보장하여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안 제1조는 조례안의 제정 목적을 규정함
-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
- 안 제3조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는 학교문화 조성, 교원의 전문적 역량과 학생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는 교육환경 등 교육활동 보호 및 학습권 보장의 기본 원칙을 규정함
- 안 제4조는 교육활동 보호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한 시책수립, 예방프로그램 운영 등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

- 안 제5조는 각급학교에서 교육활동 및 학습권 침해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조사 및 피해자 보호조치, 2차 피해 방지 등에 대한 학교장의 책무를 규정함
- 안 제6조는 교육활동의 주체인 교원·학생·학부모가 신뢰하고 협력하여 교육활동 보호 및 학습권 보장의 학교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필요한 책무를 규정함
- 안 제7조는 학교장은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부모 및 민원인의 학교내 출입관리에 관하여 규정함
- 안 제8조는 교육감이 교원의 심리적 회복지원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등 교원의 교육활동 보장에 관하여 규정함
- 안 제9조는 교육감, 학교장, 교원의 학생의 학습권 보장에 관하여 규정함

다.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존중하도록 하여,
교육 활동의 주체인 교원·학생·학부모 상호간에 신뢰하고 협력하여 교육활동 보호 및 학습권 보장의 학교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경상북도 내에서도 아래 표와 같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조례 제정은 필요한 조치로 판단됨.

【 경상북도내 교육활동 침해 현황 】

(단위: 건)

연도	주체	학생											학부모	기타 (관리자 등)	합계
	유형	상해 폭행	협박	모욕 명예 훼손	손괴	성범죄 (무단 촬영)	정보 통신방 이용 불법 정보 유통	공무 및 업무 방해	성적 몰락감 · 혐오감 느끼게 하는 행위	장당한 교육 활동을 반복 적으로 부당하 게간섭	그밖에 학교장이 판단하 는 행위	소계			
2020	초	2	1	1	0	0	0	0	1	0	0	5	2	0	7
	중	1	0	25	0	1	0	0	1	2	1	31	2	2	35
	고	2	0	30	0	0	0	1	1	2	2	38	0	1	39
	합계	5	1	56	0	1	0	1	3	4	3	74	4	3	81
	비율(%)	6.2	1.2	69.1	0	1.2	0	1.2	3.7	5.0	3.7	91.3	5.0	3.7	100
2021	초	3	0	2	0	1	0	0	0	1	0	7	6	0	13
	중	5	2	42	1	1	0	6	4	4	2	67	3	0	70
	고	1	4	39	1	3	0	1	5	4	2	60	0	0	60
	합계	9	6	83	2	5	0	7	9	9	4	134	9	0	143
	비율(%)	6.3	4.2	58.0	1.4	3.5	0	4.9	6.3	6.3	2.8	93.7	6.3	0	100
2022	유	0	0	0	0	0	0	0	0	0	0	0	0	1	1
	초	4	0	5	0	0	0	0	0	0	0	9	5	3	17
	중	15	1	52	0	0	0	2	3	1	0	74	1	2	77
	고	3	0	17	0	8	1	1	1	0	4	35	2	0	37
	합계	22	1	74	0	8	1	3	4	1	4	118	8	6	132
	비율(%)	16.7	0.8	56.1	0	6.1	0.8	2.3	3.0	0.8	3.0	89.4	6.1	4.5	100

- 특히,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침해유형도 다양해짐에 따라 본 조례 제정을 계기로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과 함께 교원들이 존중받는 학교문화 조성 및 교원들의 자긍심과 사기 진작을 위한 노력을 병행하여 교육활동 침해로 인하여 교단을 떠나는 교원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제3조와 제8조와 같이 교원의 권리나 교육활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려는 것은 국가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위임 없이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를 위반할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법제심사 의견과 관련하여 전문가에게 자문한 결과,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종교단체 등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만, 시대적 요청에 의거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고, 오히려 교사와 학부모 그리고 학생들의 갈등 방지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 판단되는 등 조례안이 타당하다는 검토 결과(붙임2)가 있었음.

- 그동안 학생선수, 미혼모·부학생 등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노력은 있었으나,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관련해서는 일부 학생이 교사의 생활지도에 불응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가 반복되면서 학교 전체의 정상적인 교육활동까지 저해하고 있다는 문제 등으로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5.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